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12(화) 총 3매(본문2, 붙임1)	
담당 부서	공공주택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김홍목, 사무관 김종욱 · ☎ (044)201-4580, 4511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-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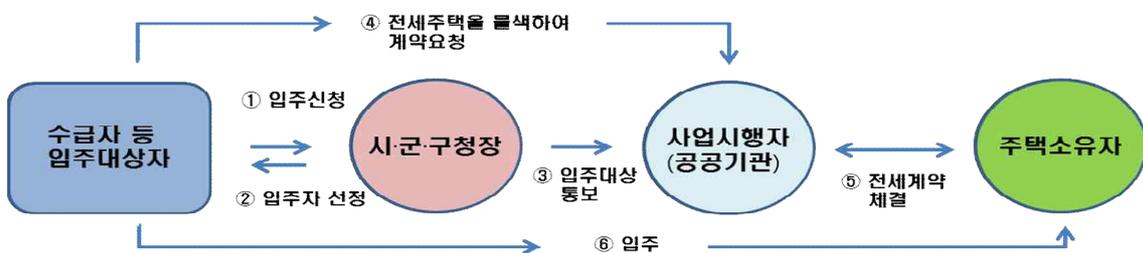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주거복지 로드맵」의 후속조치로, 전세 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- 12월 19일 공포 예정인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따라,
-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*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,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,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.

*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(태아 포함)인 경우

<전세임대주택 제도>

○ (개요)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



○ 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,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또한,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어,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특히 아동 5~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*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* 가정해체·방임·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·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

-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,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어,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었다.

- 이번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에 따라,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, 보다 많은 보호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어,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○ 또한, “「주거복지 로드맵」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김종욱 사무관(☎ 044-201-458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(기존주택의 임차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</p> <p>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0조(기존주택의 임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. <u>다만,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1.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</u></p> <p><u>2. 다자녀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를 둔 가구를 말한다]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